돌봄 아동·청소년·청년 지원법안 (김남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640

발의연월일: 2025. 1. 20.

발 의 자:김남희·조계원·김선민

김우영 · 김문수 · 이연희

김정호・김 윤・전진숙

임오경·장종태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

가족돌봄 아동·청소년은 질병, 장애, 정신건강, 알코올 중독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가족구성원을 직접 돌보는 아동·청소년을 말하 며, 국회입법조사처의 보고서에 따르면, 국내 가족돌봄 아동·청소년 은 11세 ~ 18세 인구의 5 ~ 8%인 18만 4천명에서 29만 5천명 정도 로 추정됨.

가족돌봄 아동·청소년·청년의 경우 돌봄이 필요한 가족구성원에 대한 직접적인 돌봄과 생계활동으로 인해 학업 및 진로에 대한 어려움까지 겹치게 되어 중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음. 특히, 18세 미만의돌봄 아동의 경우 「아동복지법」에 따라 보호자로부터 건강하고, 안전하게 돌봄을 받아야 할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가족을 부양하는 돌봄 주체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음.

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ㆍ청년의 이러한 어려움은 현재뿐 아니라 미

래의 삶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, 가족돌봄 아동·청소년·청년 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종합적·체계적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"돌봄대상자"란 고령·장애·질병·정신질환 또는 약물중독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, 친족, 지인을 말하고, "돌봄 아동·청소년· 청년"이란 돌봄대상자에게 간호·간병,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함(안 제3조).
- 나.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돌봄 아동 ·청소년·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(안 제6조).
- 다. 돌봄 아동·청소년·청년 지원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, 돌봄 아동·청소년·청년 지원을 위한 법령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돌봄 아동·청소년·청년 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(안 제9조).
- 라.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 아동·청소년·청년의 학업, 직업훈 런, 문화·여가생활 등 생활유지 및 미래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 원하기 위하여 자기돌봄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0조).
- 마.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돌봄아동 · 청소년 · 청년에게 돌봄서비

스, 상담, 교육, 직업체험 및 취업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(안제11조부터 제19조까지).

바.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 아동·청소년·청년 지원을 위하여 돌봄 아동·청소년·청년 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함 (안 제22조).

돌봄 아동·청소년·청년 지원법안

제1장 총칙

- 제1조(목적) 이 법은 돌봄 아동·청소년·청년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돌봄 아동·청소년·청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차별 없이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기본 이념) ① 모든 돌봄 아동·청소년·청년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, 연령, 종교, 사회적 신분, 재산, 장애유무, 출생지역 등에따라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한다.
 - ② 돌봄 아동·청소년·청년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활동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자유로이 표현할 권리 및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받는다.
 - ③ 돌봄 아동·청소년·청년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돌봄 아동 ·청소년·청년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.
 - ④ 돌봄 아동·청소년·청년은 돌봄 아동·청소년·청년의 권리보 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.

- 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뜻은 다음과 같다.
 - 1. "돌봄대상자"란 고령·장애·질병·정신질환 또는 약물중독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(「민법」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), 친족(「민법」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), 지인을 말한다.
 - 2. "돌봄 아동·청소년·청년"이란 돌봄대상자에게 간호·간병, 일상 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.
- 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 아동·청소년·청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돌봄 아동·청 소년·청년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사·연구·교육 및 홍 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 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 아동·청소년·청년을 조기에 발견하고, 지원에 필요한 법적·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다음 각 호의사항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 - 1. 돌봄 아동·청소년·청년들이 지역사회 내 복지, 보건, 주거, 법률, 금융, 교육, 일자리 등 다양한 서비스들을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 구축
 - 2. 지역사회 내 중·고등학교 및 대학교, 병원, 사회복지관 등과 연계한 돌봄 아동·청소년·청년 상시 발굴체계 구축
 - 3. 돌봄 아동·청소년·청년에 다양한 민관 서비스 제공 시 공공성 향상

- 4. 18세 미만인 돌봄 아동·청소년·청년에 대해서는 「아동복지법」 제2조, 제4조, 제5조에 부합하도록 돌봄부담에서 벗어나 아동의 권익과 안전이 존중되고 건강하게 양육될 수 있는 여건 조성
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 아동·청소년·청년 지원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분야별로 전담 조직 과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.
-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돌봄 아동·청소년·청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.
- 제5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이 법은 돌봄 아동·청소년·청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. 다만,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돌봄 아동·청소년·청년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.

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의 실시

- 제6조(돌봄 아동·청소년·청년 지원 기본계획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돌봄 아동·청소년·청년 지원 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.
 -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- 1. 돌봄 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
- 2. 돌봄 아동·청소년·청년 조기 발굴 및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
- 3. 돌봄 아동·청소년·청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
- 4. 돌봄 아동·청소년·청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·운영
- 5. 돌봄 아동·청소년·청년 지원을 위한 조사·연구·교육·홍보 및 제도개선
- 6. 돌봄 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
- 7. 돌봄 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
- 8. 그 밖에 돌봄 아동·청소년·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「아동복지법」 제7조의 아동정책기본계획,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13조의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, 「청년기본법」 제8조의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-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 9조에 따른 돌봄 아동·청소년·청년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야 한다.
- ⑤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7조(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 등) ① 보건복지부장관,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돌봄 아

- 동·청소년·청년 지원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분석·평가하고,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④ 보건복지부장관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분석·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한다.
- ⑤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 및 추진실적의 분석·평가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8조(실태조사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돌봄 아동·청소년·청년 현황 및 실태 파악과 돌봄 아동·청소년·청년 지원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돌봄 아동·청소년·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,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「아동복지법」 제11조에 따른 아동종합실태조사 또는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15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.
 -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「공공기관의 운영에

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, 그 밖의 관련 법인·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
-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 및 결과의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- 제9조(돌봄 아동·청소년·청년 정책심의위원회) ① 돌봄 아동·청소년·청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돌봄 아동·청소년·청년 정책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 - 1.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
 - 2. 돌봄 아동·청소년·청년 지원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
 - 3.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
 - 4. 돌봄 아동·청소년·청년 지원을 위한 법령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
 - 5.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
 - 6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 -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-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하고, 위원은 당연직 위

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.

- 1. 당연직 위원: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
- 2. 위촉직 위원: 돌봄 아동·청소년·청년 당사자 및 관련 단체의 장이나 돌봄 아동·청소년·청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
-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·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.

제3장 돌봄 아동 · 청소년 · 청년 지원

- 제10조(자기돌봄비 지급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 아동·청소년·청년의 학업, 직업훈련, 문화·여가생활 등 생활유지 및 미래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기돌봄비를 지급할 수 있다. ② 제1항에 따른 자기돌봄비의 지급 대상·기준,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1조(돌봄서비스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 아동·청소 년·청년이 돌봄대상자에게 간호·간병,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 의 도움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돌봄서비스의 종류, 지원 대상·기준·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- 제12조(상담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 아동·청소년·청 년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, 진 로상담, 가족상담 등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상담 지원의 대상·기준, 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- 제13조(교육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 아동·청소년·청 년이 생계와 돌봄으로 인하여 학업을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지원하 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지원의 대상·기준, 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- 제14조(직업체험 및 취업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 아동 ·청소년·청년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 - 1. 직업 적성검사 및 진로 상담프로그램
 - 2. 직업 체험 및 훈련 프로그램
 - 3. 직업 소개 및 관리
 - 4. 그 밖에 돌봄 아동·청소년·청년의 직업 체험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
 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 아동·청소년·청년을 대상으로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·기술을 습득·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업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.

-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과 제2항의 직업교육 훈련의 대상·기준, 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- 제15조(의료 및 건강관리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 아동 ·청소년·청년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질병의 예방·상담·치료, 영양·건강에 관한 교육, 건강검진 및 정신건강검사와 진료(심리치료 및 상담을 포함한다)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의료 및 건강관리 지원의 대상·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한다.
- 제16조(자립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 아동·청소년·청 년의 자립에 필요한 생활지원, 정서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다.
 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교육, 법률교육, 문화교육 등 돌봄 아동·청소년·청년의 자립에 필요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.
 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·기준, 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한다.
- 제17조(주거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 아동·청소년·청 년과 돌봄대상자가 쾌적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의 공급 및 입주자격 부여, 임대보증금 지원, 주거시설의 설치·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주거 지원의 종류, 지원 대상·기준·방법·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8조(문화활동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 아동ㆍ청소년

- ·청년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활동 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문화예술행사 개최, 국·공립 문화시설 이용료 할인 등 필요한지원을 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·기준·방법·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9조(시설의 우선 이용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 아동·청소년 ·청년과 돌봄대상자가 공공의 아동·청소년 편의시설과 그 밖의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20조(사례관리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 아동·청소년·청년 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특성에 따라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 도록 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사례관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 및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사례관리사를 둘 수있다.
 -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례관리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수 있다.
 - ④ 제2항에 따른 사례관리사의 자격·업무 등 운영에 관한 사항과 제3항에 따른 사례관리 위탁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한다.

- 제21조(돌봄 아동·청소년·청년 사회보장급여 수급 보호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대상자가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인 경우 같은 법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설급여를 우선 제공할 수 있다.
 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 아동·청소년·청년 또는 돌봄대상 자가 「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서 비스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본인부담금을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.
 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 아동·청소년·청년 또는 돌봄대상 자가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인 경우 근로능력이 있더라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「국민기 초생활보장법」 제9조제5항에 따른 조건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.

제4장 돌봄 아동ㆍ청소년ㆍ청년 전담지원 기반 구축

- 제22조(돌봄 아동·청소년·청년 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 아동·청소년·청년 지원을 위하여 돌봄 아동 ·청소년·청년 지원센터(이하 "지원센터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 -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- 1. 제11조부터 제19조까지의 돌봄 아동・청소년・청년 지원

- 2. 돌봄 아동・청소년・청년 조기 발굴 및 지역사회 지원의 연계
- 3. 돌봄 아동·청소년·청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
- 4. 돌봄 아동·청소년·청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 보
- 5. 돌봄 아동ㆍ청소년ㆍ청년 자조모임 지원
- 6. 돌봄 아동·청소년·청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·확산
- 7. 그 밖에 돌봄 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설치 · 운영을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-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위탁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 및 지원센터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- ⑤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 기준, 종사자의 자격, 제3항에 따른 위탁기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23조(지원센터와의 연계) ①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의 학교의 장 또는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의 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이 돌봄 아동·청소년·청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·청소년·청년에게 돌봄 아동·청소년·청년 지원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를 연계하여야 한다.

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돌봄 아동·청소년·청년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아동·청소년· 청년에게 돌봄 아동·청소년·청년 지원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 센터를 연계하여야 한다.
- 1.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,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장 및 같은 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의 장
- 2.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장
- 3. 「의료법」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
- 4. 「아동복지법」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
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돌봄 아동·청소년·청년 지원 프로그램의 안내 및 지원센터의 연계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- 제24조(정보시스템을 통한 업무지원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부의 효율적인 처리와 기록·관리업무의 전산화를 위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장에게 「사회보장기본법」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내 정보의 처리 권한을 줄 수 있다.

-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돌봄 아동·청소년·청년 발굴 및 지원에 필요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,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수립·관리·보유할 수 있다.
- 1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 자료 중 학생의 인적사항, 출결상황,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
- 2. 「의료법」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진료기록부 및 전자의무기록
- 3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
- 제25조(돌봄 아동·청소년·청년 복지 전담공무원) ① 돌봄 아동·청소년·청년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시·도 및 시 (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 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·군·구에 각각 돌봄 아동·청소년·청년 복지 전담공무원(이하 "전담공무원"이라 한다)을 둔다.
 - ② 전담공무원은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고 그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· 도 및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한다.
 - ③ 전담공무원은 돌봄 아동·청소년·청년에 대한 상담 및 보호조치,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 등 지역 단위에서 돌봄 아동·청소년·청년의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.

- ④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전담공무원 1인이 현실적으로 담당 가능한돌봄아동·청소년·청년 가구 수를 고려하여 적정 수의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야 한다.
- ⑤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전담공무원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.
- ⑥ 관계 행정기관, 돌봄 아동·청소년·청년 복지단체(돌봄 아동·청소년·청년의 권리를 보장하고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. 이하 같다)를 설치·운영하는 자는 전담공무원 또는 제5항에 따른 민간전문인력이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- 제26조(돌봄 아동·청소년·청년 지원업무 관련 공무원의 교육)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 아동·청소년·청년 지원 관련 업무에 종 사하는 공무원의 돌봄 아동·청소년·청년에 대한 이해 증진과 전 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- 제27조(지원 신청의 대리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돌봄 아동·청소년·청년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돌봄 아동·청소년·청년의 동의를 받아 제11조부터 제19조까지에 따른 지원을 대신 신청할 수 있다.

- 1. 전담공무원
- 2. 「초・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
- 3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
- 4. 「의료법」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
- 5. 그 밖에 돌봄 아동·청소년·청년 복지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
-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방법·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28조(협력체계 구축) 보건복지부장관은 돌봄 아동·청소년·청년 발굴 및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 치단체 및 관련 기관·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
제5장 보칙

- 제29조(비밀유지 의무) 돌봄 아동·청소년·청년 지원 관련 업무에 종 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 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제30조(권한의 위임과 위탁)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 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·도지사 또는 시 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 - ②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이 법에

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- 제31조(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) 이 법에 따른 지원센터가 아니면 돌봄 아동·청소년·청년 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.
- 제32조(벌칙) 제29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- 제33조(과태료) ① 제31조를 위반하여 돌봄 아동·청소년·청년 지원 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 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·징수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